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혁신처장이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6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참 고] 미국의 플럼 북(Plum Book) 개요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보고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5(주요직위 명부록) ① <u>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이하 이 조에서 “주요직위 명부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② <u>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대통령선거 실시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u> ③ <u>인사혁신처장은 주요직위 명부록을 제1항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보고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 및 대통령당선인 보고, 제3항에 따른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개정안은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국의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의 발간 사례를 참조하여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직위에 대한 명부록을 작성하고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선거 실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를 대상으로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이를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보고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미국의 플럼 북(Plum Book)¹⁾²⁾은 의회 소속 기관, 행정부(백악관, 행정부처, 독립기관 등), 정부기업의 주요 직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³⁾ 대통령 임명 직위를 포함하여 정책보좌관·비서 등 연

1) 플럼 북은 4년 주기로 대통령 선거 직후 인사관리처(OPM)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의회 상원(국가안보행정위원회, The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과 하원(감독혁신위원회, 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이 번갈아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2020년 12월 하원에서 발간한 플럼 북이 가장 최신 자료임.

2) [참고자료] “미국 플럼 북(Plum book) 개요” 참조

3) 수록대상 직위는 임명 방식(유형)에 따라 8가지로 구분됨 : PAS(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 PA[Presidential Appointment(without Senate Confirmation)], CA(Career Appointment), NA(Noncareer Appointment), EA(Limited emergency Appointment), TA(Limited Term Appointment), SC(Schedule C Excepted Appointment), XS(Appointment Excepted by Statute)

방정부의 9,000여개 직위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근무지, 직책, 현직자, 임명 방식(유형), 급여체계, 직급(급여 등급), 임기, 임기만료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플럼북(2020) 기재 사항]

DEPARTMENT OF JUSTICE							
Location	Position Title	Name of Incumbent	Type of Appt.	Pay Plan	Level, Grade, or Pay	Tenure	Expires
Washington, DC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r	PAS	EX	I		
	Do Chief of Staff and Senior Counselor to the Attorney General.	William Ranney Levi	NA	ES			
	Do Deputy Chief of Staff and Counselor to the Attorney General.	Rachel P Bissex	NA	ES			
	Do Counselor to the Attorney General.....	Gene P Hamilton.....	NA	ES			
	Do do	Vacant		ES			
	Do do	Ryan Newman.....	NA	ES			
	Do do	Vacant		ES			
Do	Counsel	do		ES			

※ 자료: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 (Plum Book), 2020, GovInfo(<https://www.govinfo.gov/>)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4급이상 직위에 대하여 기관별로 구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엑셀 파일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⁴⁾하고 있는데,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각 직위별 소속부서, 직위명, 현직자, 직급(직무등급), 담당업무,⁵⁾ 주요보직 경력 및 사무실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⁶⁾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주요 직위에 대해 현행 ‘국가

4)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2024년 상반기 국가 주요직위 명부에는 51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8,850개 직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음.

5) 참고로, 2024년 상반기 국가 주요직위 명부 상 인사혁신처장의 담당업무는 “인사혁신처를 대표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개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 업무 총괄”로 기재되어 있음.

6) 인사혁신처는 동 ‘국가 주요직위 명부’ 작성·공개의 취지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설명하고 있음.

주요직위 명부’에 수록된 정보 외에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및 보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⁷⁾

다만, 개정안에 따른 ‘주요직위 명부’가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주요 직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 중 ‘자격조건’이 단순히 법령상의 경력 요건⁸⁾을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나 소양, 가치관 등에 관하여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으로 봄.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당선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주요 직

7) 개정안은 제안이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 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위별로 이와 같은 자격조건을 설정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더욱이 개정안에 따른 ‘주요직위 명부’ 작성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 밖의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외에 대법
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른 헌법기
관의 직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
은 자격조건을 포함한 주요직위 명부 작성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지
위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직위 명부’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
도록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인사권
을 행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자료로서 실질적 효용
성을 가질 수 있는지, 명부 작성의 대상이 되는 직위의 범위를 어떻
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인사혁신처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다는 차원에서 현재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직위 명부’
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
한 객관적 정보는 이미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바,⁹⁾ 개정안에 따른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할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9)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에 임원 현황이 공개(알리오에서 대통령 임명 직위 여부 확인 가
능)되고 있으며, 사법부의 경우 대통령 임명 직위가 20여명에 불과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서 성명, 학력, 경력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중앙부처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명부를 사법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미국과 한국의 인사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의 플럼 북을 그대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충실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대통령이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목적과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등 다른 헌법기관의 지위와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 관련 인사 자료도 명부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정원 정보역량이 노출되는 등 국가안전보장 관련 직무 수행상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법이 그 조직과 정원을 비공개하도록 하는 법취지에도 반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미국 플럼 북(Plum Book) 개요

□ 개 요

- **(공식명칭)**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
- **(목적)**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무직, 보좌인력 등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한 직위에 대한 정보 제공
 - ※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공화당)이 20년간 지속된 민주당 장기집권 이후 새 정부 구성을 위해 전 정부에 직위 리스트를 요청한 것이 시초
- **(내용)** 대통령 임명 직위를 포함, 정책보좌관, 실무비서 등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한 연방정부 9,000여개 직위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각각 세부 임명방식 등을 정리한 인사 목록
 - ※ Policy executives(정책보좌관), Advisors(자문역), Confidential clerk(비서) 등
- **(발간)** 4년 주기로 의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상원(국가안보·행정위원회*)과 하원(감독·정부혁신위원회**) 번갈아 발간
 - * The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 ** 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최신판) 2020.12(2020.6.30. 기준 자료) 하원(감독·정부혁신위원회) 발간

□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의회 소속 기관, 행정부(백악관, 부처, 독립기관 등), 정부기업 조직 주요 직위 수록
- **(수록대상 직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안보·정책보좌 등을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Schedule C) 직위 등 수록
- **(수록 현황)**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별정직(Schedule-C)을 포함, 9,000여개 직위 수록
- **(수록내용)**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을 목적으로 임명을 위해 필요

한 직위 관련 주요 정보* 수록

* 근무지, 직위명, 현직자, 임명방식, 급여체계, 직급(급여 등급), 임기, 임기만료일